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43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강훈식·허 영·문진석

윤종군 · 김우영 · 김영진

진성준 • 모경종 • 김성회

신영대 · 임미애 · 이개호

민형배 · 김교흥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만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 임(안 제72조의4 신설 및 제71조,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장애인재활상담사, 발달재활 사"로 한다.

제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2조의4(발달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발달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발달재활사"라 한다)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 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발달재 활사 자격증을 받은 자
 - ②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③ 발달재활사 자격은 의사소통, 심리정서,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분야별로 구분한다.
- ④ 발달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 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밖에 자격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기사등"이라 한다)"를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발달재활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로, "실시하되,"를 "실시하되, 발달재활사 국가시험은 제72조의4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 자격증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76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7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제77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발달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발달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달재활관련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7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달재활 관련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이 법에 따른 발달재활사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 성 등) ① -----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ㆍ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 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 인재활상담사, 발달재활사----사, 점역(點譯) · 교정사 등 장 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 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 에 노력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조의4(발달재활사 자격증 교 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발달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발달재활사"라 한다) 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내 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 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발달재 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발달재활사자격증을 받은 자
- ②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분실 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 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③ 발달재활사 자격은 의사소 통, 심리정서, 감각운동 등 발 달재활 분야별로 구분한다.
- ④ 발달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 재활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 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밖에 자격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 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 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한다.

1. ~ 1의3. (생 략) <신 설>

2. · 3. (생략)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u>언어재활사,</u>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발달재활
사(이하"의지·보조기 기사등"
<u>이라 한다)</u>
실시하되, 발달재활사 국가
시험은 제72조의4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 자격증 종류별로 실
<u>시하여야 하며</u>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자격취소)
<u>.</u>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72조의4제4항을 위반하
여 타인에게 발달재활사 자격
증을 대여하였을 때
2. · 3. (현행과 같음)
제77조(자격정지)

로 정한다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1의3. (생 략) <u><신 설></u>

2. (생략)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발달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입힌 사실이 있을 때
2. (현행과 같음)